

광주지방법원 2022. 9. 8 선고 2021가단12020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7. 15.

판 결 선 고 2022. 9. 8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7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원고가 2017. 7. 6.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실(이하 ‘이 사건 대여금’이라 한다), 그 후 피고는

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으로 소외 C으로부터 2017. 10. 12. 5,000만 원을, 같은 달 27. 2,000만 원을, 2017. 11. 6.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D로부터 3,000만 원(이하 통틀어 ‘이 사건 각 변제금’이라 한다)을 피고의 E조합계좌(이하 ‘이 사건 E조합계좌’라고 한다)로 각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,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.

2. 원고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 주장(청구원인) 요지

피고는 위와 같이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1억 원을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이를 속여 원고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였고, 이에 원고는 2017. 10.경 소외 F 명의의 G은행계좌 등에서 피고의 이 사건 E조합계좌 및 H조합계좌로 5,000만 원과 2,000만 원의 합계 7,000만 원을 이체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을 중복 변제하게 되었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위 7,000만 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2017. 10.경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으로 F 명의의 G은행계좌 등에서 피고의 이 사건 E조합계좌 및 H조합계좌로 7,000만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,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, 오히려 을 제1호증의 1, 2(피고의 이 사건 E조합계좌 및 H조합계좌의 각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)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위 각 계좌에 앞서 본 이 사건 각 변제금 외에 원고 주장의 변제금 7,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.

따라서,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용태